

2 개정조문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의2(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)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(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“주택”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.</p> <p>1. ~ 16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8조의2(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6. (생 략)</p> <p>17. 「주택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(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</p> <p>가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</p> <p>나.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것</p>
<p>제28조의4(주택 수의 산정방법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</p>	<p>제28조의4(주택 수의 산정방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/p>